#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48

발의연월일: 2024. 11. 21.

발 의 자: 박해철・김주영・권향엽

이광희 • 이용우 • 박지혜

박홍배 · 송재봉 · 송옥주

정성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취업교육 내용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료보건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근로자 인권에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간과 내용,"을 "시간 및"으로 한다.

-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 6.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사항
- 7.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 취업교육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② (생 략) < <u>신 설&gt;</u>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 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 지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6.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 지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 등

<u>③</u>	외국인	취업교	육의	<u>시간과</u>
<u>내용</u>	-, 그 밖	에 외국	인 취	입교육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
렁으	로 정한	난다.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u>④</u> 시간 및